

“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합니다.”



감 사 원

바른감사
바른나라

수 신 고용노동부장관(산재보상정책과장)
(경 유)
제 목 심사청구의 처리

1. 귀 부에서 2019. 8. 26.(산재보상정책과-4076) 우리 원에 보내신 청구인 주식회사 [REDACTED] 로직스(대표이사 [REDACTED])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심리하고 불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처분청에도 위 결정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인이 이 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문 사본을 감사원(심사1담당관)으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심사결정서 등본 1건 1부. 끝.

감 사 원



부감사관 [REDACTED]

심사1담당관 [REDACTED]

협조자

시행 심사1담당관- 1139 (2019. 11. 4.) 접수

우 0305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삼청동 25-23)

/ www.bai.go.kr

전화번호 [REDACTED] 팩스번호 [REDACTED] /

/ 비공개(1, 6)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9-심사-567

제 목 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redacted] 로직스(대표이사 [redacted])
[redacted]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redacted]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redacted]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경기도 [redacted] 에서 2017. 6. 3.부터 이틀간 진행된 “2017년 관리부 워크숍”(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가하여 2017. 6. 3. 18:00경 휴식시간에 동료 직원들과 함께 물놀이기구 탑승 중 물놀이기구가 공중으로 뜨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상완골 요골 신경 포착을 동반한 나선형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1. 17. 처분청에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와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19. 4. 11.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고는 워크숍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적인 행동인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이고 재해자는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8.부터 2017. 10. 19.까지 비서로 근무하였다.

2) 2018. 12. 19. 재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경영지원팀장인 ■■■■는 이 사건 행사는 연 1회 사업 본부별로 실시하고 경영지원실과 기획실 직원 22명 중 21명이 참가하였으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경영지원실장 ■■■■이 청구인의 대표자 위치에서 참가하였고 장소 대여비, 식비, 이동 경비 등 행사 비용 일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산재보험 문답서”를 통해 처분청에 진술하였다.

3) 처분청과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휴식시간에 워크숍 참가 직원들이 수면을 취하거나 샤워를 하는 등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금지사항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되어 있다.

4) 2019. 4. 11. 처분청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행사에 근로자의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며 청구인이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경영지원실 [] 실장이 [] 차장에게 사전에 보고 받아 재해자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물놀이를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5) 물놀이 기구를 함께 탄 동료근로자인 []이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재해자는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6) 재해자가 2017. 6. 3. 구급차로 도착한 []병원의 응급실 경과기록지 등에 따르면 “상환 기저질환 없는 자로 디스코 보트를 타다 물로 떨어진 후 Rt. arm pain을 주소로 내원함”이라고 내원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표]와 같다.

[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구분 (의료기관명)	내용	날짜
장해진단서 (본서부병원)	▶ 상병명: 우측 상완골 요골 신경 포착을 동반한 나선형 골절 ▶ 재해경위: 2017. 6. 3. 회사 워크숍 중 물놀이 기구를 타던 도중 수상 ▶ 주요 검사내용: X-Ray, CT	'18. 11. 19.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처분청)	▶ 최초요양 신청 상병명: 우측 상완골 요골 신경 포착을 동반한 나선형 골절 ▶ 의학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함	'18. 12. 12.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등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대상자 중 최고위직인 경영지원실 ■■■
■■■ 실장 등 대부분의 직원이 참가하였고 청구인이 행사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공식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② 인정사실 “3)항” 및 “4)항”
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이 사전에 금지사항 없이 휴식시
간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재해자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물놀이를 간다는 것을 경영지원실 ■■■ 실장이 보고 받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고를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재해조사서”를 통해 이 사건 행사에 근로자의 참가가 사
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며 청구인이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④ 인정사실 “5)항” 및 “6)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착한 의료기관의
내원 경위도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일치하는 점, ⑤ 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
이 처분청이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
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문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 11 . 04 .

이는 동본임
서기 2019년 11월 4일
감사위원인 [인]
[인]
[인]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7. (생략)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생략)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제42조(자문의사)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